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GKL 2022~2024 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예정원가계산보고서

2021. 10.

대원경영연구소

제 출 문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 귀중

이 보고서를 「GKL 2022~2024 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의
예정원가계산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0.

대 원 경 영 연 구 소



목 차

I. 원가계산결과	1
II. 원가계산개요	3
III. 원가계산전제	5
IV. 비목별산정기준	7
V. 용역원가계산서.....	12
VI. 계산기초자료.....	14
VI-1. 인건비.....	15
VI-2. 경비.....	19
VI-3. 일반관리비.....	23
VI-4. 이윤.....	25
< 별첨 >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27

I. 원가계산결과

I. 원가계산결과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귀중

우리 연구원에서 『2022~2024 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단 위 : 원

과업명	규격	단위	금액	비고
2022~2024 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귀제시 과업지시서 참조	식	242,005,308	

주)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원가계산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제534호, 2021.3.28)』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가요소별로 계산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Ⅱ. 원가계산개요

Ⅱ. 원가계산개요

1. 목 적

본 원가계산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4호, 2021.3.28.)」에서 정한 원가계산 방법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GKL 2022~2024 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에 대한 적정 원가를 계산·파악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원가계산의 종류

예정원가계산

3. 원가계산의 방법

본 원가계산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4호, 2021.3.28.)」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가요소별로 계산되었습니다.

4. 의뢰처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5. 의뢰 과업명

과업명 : GKL 2022~2024 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단위 : 원/식

6. 조사 기간

2021. 10. . ~ 2021. 10. .

7. 가격 조건

부가가치세 포함

Ⅲ. 원가계산전제

Ⅲ. 원 가 계 산 전 제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GKL 2022~2024 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나. 과업기간 : 2022~2024 사업연도 (3개년)

2. 주요업무 및 감사대상

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분기·반기 검토 및 기말 회계감사

나. 감사대상은 GKL과 자회사인 지케이엘위드주식회사로 함

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행함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3. 과업 범위

가. 2022, 2023, 2024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

- 1) 별도·연결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검토
- 2) 별도·연결 기말 감사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감사

- 1) 2022, 2023,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감사
- 2) 2024 회계연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다. 2022, 2023, 2024 회계연도 지배회사(한국관광공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그룹에 대한 보고 패키지의 감사/검토

라. 정부경영평가 경영실적보고서 중 계량지표실적 확인

- 1) 정부경영평가 제도의 변경 등으로 당해 업무 불 필요시에는 과업내용은 변경가능하며, 이에 상당한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에서 감액함

IV. 비 목 별 산 정 기 준

IV. 비 목 별 산 정 기 준

“GKL 2022~2024 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의 원가 구성은 물자 제조 원가의 구성요인과 달리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제534호, 2021.3.28)」과 일반적으로 용역원가에서 인정되는 비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1. 인건비의 산정

가. 투입인원 및 투입공수의 산정

1) 투입인원에 대한 직종의 결정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정한 직종인 책임연구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감사시간의 산정

외부회계감사 소요시간은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산정된 표준감사시간(『표준감사시간 제정안』,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제1호 2019.1.22.)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감사시간을 비교하여 표준감사시간 이상의 시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나. 기준 인건비 단가의 결정

기준인건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4호, 2021.3.28.)』의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한 책임연구원의 인건비와 회계법인 조사단가의 평균단가를 기준 인건비단가로 적용하였습니다.

1) 직종해설 및 인건비 기준단가표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인건비 기준단가/월
책임연구원	당해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6,491,758원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4,977,794원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3,327,486원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2,495,700원

주) 상기단가는 직무수당, 가족구당, 자녀학비보조, 식비가 포함된 단가임

2) 기준인건비의 결정

1)항에서 직종별 인건비 기준단가가 결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여 학술연구용역 기준 인건비를 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직 종 별	기본급	상여금	퇴직충당금	기준인건비 (월간)
책임연구원	6,491,758	2,163,919	721,306	9,376,983
연구원	4,977,794	1,659,264	553,088	7,190,146
연구보조원	3,327,486	1,109,162	369,720	4,806,368
보조원	2,495,700	831,900	277,300	3,604,900

주1)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4호. 2021.3.28.)

학술연구용역비 기준단가

2) 상여금은 기본급에 대하여 년 400%지급기준

3) 퇴직급여충당금은 지급액(기본급+상여금)에 대하여 1/12 총당 기준

3) 인건비의 산정

1)항에서 본 과업에 투입되는 직종별 투입인원 및 투입일수(월수)가 산출 되었고,

2)항에서 직종별 기준인건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산출되었습니다.

2. 경비의 산정

본 계산에서는 과업지시서와 유사전문업체 실적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경비를 적용하였습니다.

가. 도서인쇄비

나. 여비교통비

3. 일반관리비의 산정

일반관리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기타 용역업 부문을 6%로 인건비, 경비합계액을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4. 이윤의 산정

이윤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용역업 부문을 10%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을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단, 과업 수행자가 비영리 법인인 경우 이윤은 계상할 수 없음)

5. 부가가치세

본 원가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용역비의 변동

본 계산은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여건의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본 원가는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과업내용 및 과업수행 기간의 변동

나. 투입인원 및 투입일수의 변동

다. 인건비 기준단가의 변동

라. 기타 공공요금 및 원가에 관련된 제 여건의 변동

V. 용역원가계산서

V. 용역원가계산서

과업명 : 2022~2024 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용역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	비 고
① 인건비	공 인 회 계 사	173,538,485		
	소 계	173,538,485	78.88	인건비계산표 참조
② 경비	도 서 인 쇄 비	894,900		
	여 비 교 통 비	14,250,000		
	소 계	15,144,900	6.88	경비집계표 참조
③	계	188,683,385	85.76	인건비+경비
④	일 반 관 리 비 (6%)	11,321,003	5.15	계×6%
⑤	이 윤 (10%)	20,000,438	9.09	(계+일반관리비)×10%
⑥	총 원 가	220,004,826	100.00	계+일반관리비+이윤
⑦	부 가 가 치 세 (10%)	22,000,482		총원가×10%
⑧	합 계	242,005,308		총원가+부가가치세

VI. 계 산 기 초 자 료

VI-1. 인 건 비

VI-2. 경 비

VI-3. 일 반 관 리 비

VI-4. 이 윤

VI-1. 인 건 비

< 표VI-1 >

인건비 계산표

과업명 : 2022~2024 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용역

단위 : (M/M)

직급명	대 상 업 무 내 용	단위	감사 시간	노임단가	금 액
책임 연구원	<input type="checkbox"/> 감사수행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수행 추진방안 정립 • 과업수행에 대한 전문인력 편성 • 업무세부일정 및 추진방향 계획 • 과업세부내용에 대한 각 인력의 업무할당 				
	<input type="checkbox"/> 회계감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2024 회계연도 연도별 회계감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연결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검토 - 별도·연결 기말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감사 - 회계연도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지배회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그룹에 대한 보고 패키지의 감사/검토 • 정부경영평가 경영실적보고서 계량지표실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경영평가제도 모니터링 				
	<input type="checkbox"/>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감법에 의한 회계감사수행 • 전문가, 자문가, 관계사 동향 및 의견 수렴 				
	<input type="checkbox"/> 감사보고서 작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심의 				
계		시간	2,735	63,451	173,538,485

주 1) 감사시간 : <표 VI-1-1> 참조

주 2) 노임단가 : <표 VI-1-2> 참조

< 표VI-1-1 >

감사시간 적용 내역

회계법인 조사 감사시간		KICPA 표준감사시간	적용	비고
A회계법인	2,800			
B회계법인	2,960			
C회계법인	2,446			
평균	2,735	2,446	2,735	

주) 과업지시서에 의거 감사시간은 KICPA의 표준감사시간 이상으로 적용함에 따라

회계법인 조사 평균시간을 적용하였음

< 표VI-1-2 >

노임단가 산정표

구분		기본급	상여금	퇴직총당금	M/M당 노임단가	
					월노임	시간당노임
학술노임단가 기준시	책임연구원	6,491,758	2,163,919	721,306	9,376,983	53,278
회계법인 통용단가 기준시	A사					80,751
	B사					77,967
	C사					62,157
	평균					73,624
적용단가						63,451

주1) 학술연구 노임단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4호('21.3.28)(참여율 100%) 기준

2) 적용단가 : 외부감사업무 특성에 따라 학술노임단가와 회계법인 통용단가의
평균단가를 적용하였음

VI-2. 경 비

< 표VI-2 >

경비 집계표

과업명 : 2022~2024 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용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도 서 인 쇄 비	894,900	도서인쇄비 계산표 참조
여 비 교 통 비	14,250,000	여비교통비 계산표 참조
계	15,144,900	

주)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임

< 표VI-2-1 >

도서인쇄비 계산표

과업명 : 2022~2024 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용역

단위 : 원

세부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도·연결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면	120	4,710	565,200	국문 각20부 기준
별도·연결 기말 감사 보고서	면	70	4,710	329,700	국문 각30부 기준
				894,900	

주) 면당 단가 : 조달청인쇄요율 (2005.3.4) 적용

• 경인쇄 16절 백상지 면당단가 8,180원 - 조판생략 감액 3,470원 = 4,710원

< 표VI-2-2 >

여비교통비 계산표

과업명 : 2022~2024 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용역

단위 : 원

세부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분기·반기·기말 감사 (연6회, 5일×5인 상주기준)	일	150	95,000	14,250,000	
				14,250,000	

주) 여비교통비 단가 : 공무원여비규정 2017.07.26(대통령령 제28211호) 적용

VI-3. 일반관리비

< 표VI-3 >

일반관리비 비율표

과업명 : 2022~2024 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용역

업종	일반관리비율(%)
1. 공사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10. 수입물품의 구매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5%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
17. 기타 용역	6%
적용비율	6%

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참조

VI-4. 이 윤

< 표VI-4 >

이윤율 비교표

과업명 : 2022~2024 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용역

구분	이윤율	비고
1.시설공사	15%	
2.제조.구매	25%	
3.수입물품의 구입	10%	
4.용역	10%	
적용비율	10%	

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참조

< 별 첨 >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한 공 회 제1호
제 정 2019.01.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2 제1항에 따라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이 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회사
3. 그밖에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기 어렵다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회사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감사시간”이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절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을 말한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업무(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또는 감사(영문감사 제외),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 등 포함)와 분반 기검토를 수행하는 담당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품질관리검토자,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 등 회계법인 내부 전문가의 투입시간을 포함한다.

2. “감사인숙련도”란 담당이사, 등록회계사, 수습회계사, 품질관리 검토자, 세무·전산·평가 등 회계법인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팀의 팀단위 숙련도를 말한다.

개별 감사팀의 감사인숙련도는 감사팀원의 경력별가중치를 감사팀원의 감사투입시간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text{감사인숙련도(개별감사팀단위)} = \sum_i^n \text{경력별가중치}_i \times \text{감사시간투입비율}_i$$

이 경우 경력별가중치는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별표3. 감사인지정점수 산정기준”에서 제시한 경력별가중치를 적용하며 아래 표와 같다.

실무수습 1년·2년	경력기간 2년 미만	경력기간 2년 이상 6년 미만	경력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력기간 15년 이상
0.4	0.8	1.0	1.1	1.15	1.2

경력기간, 산정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외감규정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계법인 내부 전문가의 숙련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숙련도를 적용한다.

3. “기준숙련도”란 표준감사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적인 감사인숙련도를 말한다.
4. “숙련도조정계수”란 기준숙련도에 기초하여 산정된 표준감사

시간을 개별 감사팀의 감사인숙련도에 맞게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조정계수를 말하며, 기준숙련도를 감사인숙련도로 나누어 산출한다.

$$\text{숙련도조정계수} = \text{기준숙련도} / \text{감사인숙련도 (개별감사팀단위)}$$

제4조(그룹구분) ① 표준감사시간은 상장여부, 회사의 규모, 사업 복잡성,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성, 감사인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그룹으로 구분한다.

1. 그룹 1: 다음 각 목의 회사

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주권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기준 기업규모(자산총액과 매출액의 단순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조원 이상인 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 라 한다)

$$* \text{기업규모} = \frac{\text{총자산} + \text{매출액}}{2} \quad (\text{연결재무제표 감사는 연결기준으로 산정})$$

나. “가” 목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하의 종속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기준 기업규모가 5조원 이상인 비상장회사

다. 그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회사

2. 그룹 2: 그룹 1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주권상장법인(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권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함)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

3. 그룹 3: 그룹 1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주권상장법인(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권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함)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회사
4. 그룹 4: 그룹 1, 그룹 2, 그룹 3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주권상장법인(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권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함)
5. 그룹 5: 다음 각 목의 회사
 - 가. 코넥스 주권상장법인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6. 그룹 6: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제5호 “나” 목에 속하는 비상장회사 제외)
7. 그룹 7: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백억이상 1천억미만인 비상장회사(제5호 “나” 목에 속하는 비상장회사 제외)
8. 그룹 8: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백억이상 5백억미만인 비상장회사(제5호 “나” 목에 속하는 비상장회사 제외)
9. 그룹 9: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백억미만인 비상장회사(제5호 “나” 목에 속하는 비상장회사 제외)

② 기중에 분할 또는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또는 자산양수도 등이 발생한 회사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일 또는 해당 거래 발생일과 가장 근접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그룹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표준감사시간의 산정) ① 표준감사시간은 제4조 제1항의 그룹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② 그룹 1 표준감사시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1. 그룹 1 표준감사시간은 개별 추정으로 산정된다. 기업규모 구간에 따른 업종별 평균 표준감사시간은 별표 1과 같다.
2.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검사가 수행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표준감사시간의 40%를 내부회계관리제도검사 표준감사시간으로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표준감사시간에 내부회계관리제도검사 표준감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또는 나스닥 상장사와 그 종속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그룹 1 표준감사시간 산정결과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해당 감사인과 회사에게 통지한다.

③ 그룹 2부터 그룹 9의 표준감사시간은 다음 각 호의 그룹별 산식에 따라 산정된 결과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기준숙련도는 별표 10과 같다.

표준감사시간	=	그룹별 산식에 따른 산정결과	X	숙련도조정계수 (개별감사팀단위)
--------	---	--------------------	---	----------------------

1. 그룹 2 표준감사시간 산식은 별표 2와 같다.

2. 그룹 3의 표준감사시간 산식은 별표 3과 같다.
3. 그룹 4의 표준감사시간 산식은 별표 4와 같다.
4. 그룹 5의 표준감사시간 산식은 별표 5와 같다.
5. 그룹 6의 표준감사시간 산식은 별표 6과 같다.
6. 그룹 7의 표준감사시간 산식은 별표 7과 같다.
7. 그룹 8의 표준감사시간 산식은 별표 8과 같다.
8. 그룹 9의 표준감사시간 산식은 별표 9와 같다.
9.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 중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검사가 수행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별표 2 산식에 의해 산정된 표준감사시간의 40%를 내부회계관리제도검사 표준감사시간으로 가산한다.

④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이 회사의 감사인과 동일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연결재무제표 감사의 경우 제3항 각 호의 산식에 적용하는 기업규모는 연결기준 기업규모에서 동일 감사인이 감사하는 종속회사 기업규모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결기준 기업규모는 내부거래 제거 전 금액(투자와 자본, 매출과 매입, 채권과 채무 등 일체의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전 금액을 말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p>* 연결감사기업규모 = 연결기준기업규모(내부거래제거전) - \sum_i 동일 감사인 종속회사기업규모_i</p>
--

나. 관계회사가 포함된 재무제표 감사의 경우 제3항 각 호의 산식에 적용하는 기업규모는 총자산에서 동일 감사인이 감사하는 관계회사금액을 차감한다.

<p>* 기업규모 = $\frac{(\text{총자산} - \sum_j \text{동일 감사인 관계회사금액}_j) + \text{매출액}}{2}$</p>
--

⑤ 그룹 2부터 그룹 9 중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표준감사시간은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주요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감사시간을 해당 업종별 매출액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다.

$$\text{복수업종 표준감사시간} = \sum_k \text{주요업종 표준감사시간}_k \times \text{주요업종 매출액비율}_k$$

제6조(표준감사시간의 적합도심사) ① 회사와 감사인은 표준감사시간의 적합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의 적합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준감사시간 적합도심사를 신청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표준감사시간 적합도심사 신청 이유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가 적합도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의 적합도심사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적합도심사위원회를 둔다. 표준감사시간적합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7조(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 검토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서 정한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 재무정보의 변동과 실제감사투입시간 자료의 축적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제8조(문서화) ① 감사인은 개별 회사의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와 산정결과를 문서화한다.

② 실제 투입감사시간과 이 규정에 따라 산정된 표준감사시간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 차이내역과 사유를 문서화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그룹별 적용례) 그룹 7, 그룹 8, 그룹 9의 경우 이 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의 시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

각 그룹별 시행시기와 표준감사시간 적용율은 다음과 같다.

<그룹별 시행시기와 표준감사시간 적용율>

그룹	기준 (개별자산)	시행방안	2019	2020	2021
그룹1	2조원 이상 (연결규모 5조원 이상)	2019 시행	100%	100%	100%
그룹2	2조원 이상 상장사	2019 시행	100%	100%	100%
그룹3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그룹4	1천억원 미만 상장사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그룹5	코넥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그룹6	1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2019 시행 단계적 적용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그룹7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비상장사	2020 시행 단계적 적용	유예	80% 이상	90% 이상
그룹8	2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2021 시행 단계적 적용	유예	유예	80% 이상
그룹9	2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2022 시행 단계적 적용	유예	유예	유예

[별표 1] 그룹 1 기업 규모 구간에 따른 업종별 평균 표준감사시간

☞ 그룹 1 표준감사시간 산정결과는 향후 개별 기업별로 제시할 예정임. 개별자산 2조 원이상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미국 상장사 제외), 재무제표감사 표준감사시간에 0.4를 곱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함

아래 표는 규모별·업종별 산정결과 평균을 제시한 것으로 개별 기업의 표준감사시간과 차이가 있음.

기업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5조~10조	8,532	9,086	11,748	4,635	7,749	3,948
10조~20조	10,958	7,677	18,334	7,004	8,799	
20조~50조	13,875	19,838		7,722	23,151	8,697
50조 이상	31,760	19,000		22,480		29,337

[별표 2] 그룹 2 표준감사시간 산식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은 아래에서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의 40%)

$$\text{표준감사시간} = \text{표준감사시간}_A \times 50\% + \text{표준감사시간}_B \times (1 - 50\%)$$

$$\begin{aligned} \text{표준감사시간}_A &= 4.138 \times \text{기업규모}^{0.229} \times \text{업종계수}_A \times \text{검토계수}_A \\ &\quad \times (1 + \text{자회사수})^{0.114} \times \text{KAM계수} \times \text{초도감사계수} \end{aligned}$$

$$\begin{aligned} \text{표준감사시간}_B &= 6.620 \times 10^{-1} \times \text{기업규모}^{0.281} \times \text{업종계수}_B \\ &\quad \times 2.718^{0.118 \times \text{위험계정비중}} \times \text{손실계수}_B \times \text{검토계수}_B \times \text{연결계수}_B \\ &\quad \times (1 + \text{자회사수})^{0.120} \times \text{KAM계수} \times \text{초도감사계수} \end{aligned}$$

* 업종계수_A(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구분, 별표 5 참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000	1.030	1.210	0.757	1.117	0.920

* 검토계수_A = 분기검토를 하는 경우 1.339, 아니면 1

* 업종계수_B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구분, 별표 5 참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000	0.969	1.235	0.725	1.098	0.869

* 손실계수_B = 당기순손실인 경우 1.139, 아니면 1

* 검토계수_B = 분기검토를 하는 경우 1.607, 아니면 1

* 연결계수_B =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1.111, 아니면 1

* 기업규모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말 매출액)/2 (연결 기준)

* 위험계정비중 = 총자산대비 (매출채권+재고자산)의 비중 (연결 기준)

* 자회사수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회사 수

* KAM계수 = 핵심감사제를 적용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1.1, 아니면 1

* 초도감사계수 = 초도감사이면 1.2, 아니면 1 (단, 당기감사인이 직직전 선임된 감사인이었으면 1.1)

<그룹 2 표준감사시간 표>

*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값이 그룹 내 중위수에 해당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을 나타냄. 실제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해당 기업의 실제 값에 근거하여 산식을 통해 산출되므로 아래의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기업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2조	4,714	4,715	5,762	3,494	5,220	4,218
2조 5천억	4,989	4,990	6,099	3,698	5,524	4,464
3조	5,227	5,226	6,389	3,873	5,787	4,676
3조 5천억	5,436	5,435	6,645	4,028	6,018	4,862
4조	5,624	5,622	6,875	4,167	6,226	5,030
4조 5천억	5,795	5,793	7,085	4,294	6,416	5,183

[별표 3] 그룹 3 표준감사시간 산식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은 아래에서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의 40%)

$$\text{표준감사시간} = \text{표준감사시간}_A \times 50\% + \text{표준감사시간}_B \times (1 - 50\%)$$

$$\begin{aligned} \text{표준감사시간}_A &= 4.138 \times \text{기업규모}^{0.229} \times \text{업종계수}_A \times \text{검토계수}_A \\ &\quad \times (1 + \text{자회사수})^{0.114} \times \text{KAM계수} \times \text{초도감사계수} \end{aligned}$$

$$\begin{aligned} \text{표준감사시간}_B &= 8.814 \times \text{기업규모}^{0.192} \times \text{업종계수}_B \times 2.718^{0.118 \times \text{위험계정비중}} \\ &\quad \times \text{손실계수}_B \times \text{검토계수}_B \times \text{연결계수}_B \times (1 + \text{자회사수})^{0.077} \times \text{KAM계수} \\ &\quad \times \text{초도감사계수} \end{aligned}$$

* 업종계수_A(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구분, 별표 5 참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000	1.030	1.210	0.757	1.117	0.920

* 검토계수_A = 분기검토를 하는 경우 1.339, 아니면 1

* 업종계수_B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구분, 별표 5 참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000	0.969	1.235	0.725	1.098	0.869

* 손실계수_B = 당기순손실인 경우 1.139, 아니면 1

* 검토계수_B = 분기검토를 하는 경우 1.178, 아니면 1

* 연결계수_B =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1.111, 아니면 1

* 기업규모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말 매출액)/2 (연결 기준)

* 위험계정비중 = 총자산대비 (매출채권+재고자산)의 비중 (연결 기준)

* 자회사수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회사 수

* KAM계수 = 핵심감사제를 적용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1.1, 아니면 1

* 초도감사계수 = 초도감사이면 1.2, 아니면 1 (단, 당기감사인이 직직전 선임된 감사인이었으면 1.1)

<그룹 3 표준감사시간 표>

*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값이 그룹 내 중위수에 해당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을 나타냄. 실제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해당 기업의 실제 값에 근거하여 산식을 통해 산출되므로 아래의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기업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천억	1,511	1,512	1,846	1,120	1,673	1,353
2천억	1,749	1,751	2,137	1,297	1,937	1,567
5천억	2,123	2,127	2,593	1,575	2,352	1,903
8천억	2,345	2,350	2,864	1,741	2,598	2,102
1조	2,458	2,464	3,002	1,825	2,724	2,204
1조2천억	2,555	2,562	3,121	1,897	2,831	2,292
1조5천억	2,679	2,686	3,271	1,989	2,968	2,403
1조8천억	2,784	2,792	3,400	2,068	3,085	2,498

[별표 4] 그룹 4 표준감사시간 산식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은 아래에서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의 40%)

$$\text{표준감사시간} = \text{표준감사시간}_A \times 50\% + \text{표준감사시간}_B \times (1 - 50\%)$$

$$\begin{aligned} \text{표준감사시간}_A &= 4.138 \times \text{기업규모}^{0.229} \times \text{업종계수}_A \times \text{검토계수}_A \\ &\quad \times (1 + \text{자회사수})^{0.114} \times \text{KAM계수} \times \text{초도감사계수} \end{aligned}$$

$$\begin{aligned} \text{표준감사시간}_B &= 1.029 \times 10^1 \times \text{기업규모}^{0.184} \times \text{업종계수}_B \\ &\quad \times 2.718^{0.118 \times \text{위험계정비중}} \times \text{손실계수}_B \times \text{검토계수}_B \times \text{연결계수}_B \\ &\quad \times (1 + \text{자회사수})^{0.133} \times \text{KAM계수} \times \text{초도감사계수} \end{aligned}$$

* 업종계수_A(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구분, 별표 5 참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000	1.030	1.210	0.757	1.117	0.920

* 검토계수_A = 분기검토를 하는 경우 1.339, 아니면 1

* 업종계수_B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구분, 별표 5 참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000	0.969	1.235	0.725	1.098	0.869

* 손실계수_B = 당기순손실인 경우 1.139, 아니면 1

* 검토계수_B = 분기검토를 하는 경우 1.178, 아니면 1

* 연결계수_B =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1.111, 아니면 1

* 기업규모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말 매출액)/2 (연결 기준)

* 위험계정비중 = 총자산대비 (매출채권+재고자산)의 비중 (연결 기준)

* 자회사수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회사 수

* KAM계수 = 핵심감사제를 적용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1.1, 아니면 1

* 초도감사계수 = 초도감사이면 1.2, 아니면 1 (단, 당기감사인이 직직전 선임된 감사인이었으면 1.1)

<그룹 4 표준감사시간 표>

*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값이 그룹 내 중위수에 해당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을 나타냄. 실제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해당 기업의 실제 값에 근거하여 산식을 통해 산출되므로 아래의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기업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00억	880	879	1,076	651	974	786
200억	1,015	1,015	1,241	752	1,124	908
300억	1,104	1,104	1,349	818	1,222	987
400억	1,171	1,172	1,432	868	1,297	1,048
500억	1,227	1,227	1,500	909	1,358	1,098
600억	1,274	1,274	1,557	944	1,411	1,140
700억	1,315	1,316	1,608	975	1,457	1,177
800억	1,352	1,353	1,653	1,002	1,497	1,210
900억	1,386	1,386	1,693	1,027	1,534	1,240

[별표 5] 그룹 5 표준감사시간 산식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은 아래에서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의 40%)

$$\begin{aligned} \text{표준감사시간} &= \text{표준감사시간}_A \times 50\% + \text{표준감사시간}_B \times (1 - 50\%) \\ \text{표준감사시간}_A &= 9.260 \times 10^{-3} \times \text{기업규모}^{0.436} \times \text{업종계수}_A \times \text{검토계수}_A \\ &\quad \times (1 + \text{자회사수})^{0.066} \times \text{KAM계수} \times \text{초도감사계수} \\ \text{표준감사시간}_B &= 1.538 \times \text{기업규모}^{0.254} \times \text{업종계수}_B \times 2.718^{0.253 \times \text{위험계정비중}} \\ &\quad \times \text{손실계수}_B \times \text{IFRS계수}_B \times \text{검토계수}_B \times \text{연결계수}_B \times (1 + \text{자회사수})^{0.091} \\ &\quad \times \text{KAM계수} \times \text{초도감사계수} \end{aligned}$$

* 업종계수_A(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구분, 별표 5 참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000	0.869	1.258	0.830	1.039	0.671

* 검토계수_A = 반기검토 또는 분기검토를 하는 경우 1.597, 아니면 1

* 업종계수_B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구분, 별표 5 참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000	0.899	1.146	1.077	0.872	0.707

* 손실계수_B = 당기순손실인 경우 1.194, 아니면 1

* IFRS계수_B = IFRS인 경우 1.264, 아니면 1

* 검토계수_B = 반기검토 또는 분기검토를 하는 경우 1.085, 아니면 1

* 연결계수_B =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1.114, 아니면 1

* 기업규모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말 매출액)/2 (연결 기준)

* 위험계정비중 = 총자산대비 (매출채권+재고자산)의 비중 (연결 기준)

* 자회사수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회사 수

* KAM계수 = 핵심감사제를 적용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1.1, 아니면 1

* 초도감사계수 = 초도감사이면 1.2, 아니면 1 (단, 당기감사인이 직직전 선임된 감사인이었으면 1.1)

<그룹 5 표준감사시간 표>

*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값이 그룹 내 중위수에 해당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을 나타냄. 실제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해당 기업의 실제 값에 근거하여 산식을 통해 산출되므로 아래의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기업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00억	556	495	657	557	513	387
200억	691	614	818	687	640	480
500억	925	821	1,098	911	863	641
1천억	1,158	1,027	1,379	1,132	1,086	801
2천억	1,455	1,289	1,738	1,412	1,373	1,006
5천억	1,980	1,752	2,374	1,901	1,881	1,366
1조	2,510	2,219	3,019	2,392	2,399	1,729
2조	3,196	2,822	3,855	3,020	3,071	2,198

[별표 6] 그룹 6 표준감사시간 산식

$$\begin{aligned} \text{표준감사시간} &= \text{표준감사시간}_A \times 50\% + \text{표준감사시간}_B \times (1 - 50\%) \\ \text{표준감사시간}_A &= 9.260 \times 10^{-3} \times \text{기업규모}^{0.436} \times \text{업종계수}_A \times \text{검토계수}_A \\ &\quad \times (1 + \text{자회사수})^{0.066} \times \text{초도감사계수} \\ \text{표준감사시간}_B &= 2.251 \times 10^1 \times \text{기업규모}^{0.141} \times \text{업종계수}_B \\ &\quad \times 2.718^{0.253 \times \text{위험계정비중}} \times \text{손실계수}_B \times \text{IFRS계수}_B \times \text{검토계수}_B \\ &\quad \times \text{연결계수}_B \times (1 + \text{자회사수})^{0.091} \times \text{초도감사계수} \end{aligned}$$

* 업종계수_A(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구분, 별표 5 참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000	0.869	1.258	0.830	1.039	0.671

* 검토계수_A = 반기검토 또는 분기검토를 하는 경우 1.597, 아니면 1

* 업종계수_B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구분, 별표 5 참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000	0.680	0.864	0.872	0.898	0.271

* 손실계수_B = 당기순손실인 경우 1.015, 아니면 1

* IFRS계수_B = IFRS인 경우 1.133, 아니면 1

* 검토계수_B = 반기검토 또는 분기검토를 하는 경우 1.709, 아니면 1

* 연결계수_B =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1.007, 아니면 1

* 기업규모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말 매출액)/2 (연결 기준)

* 위험계정비중 = 총자산대비 (매출채권+재고자산)의 비중 (연결 기준)

* 자회사수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회사 수

* 초도감사계수 = 초도감사이면 1.2, 아니면 1 (단, 당기감사인이 직직전 선임된 감사인이었으면 1.1)

<그룹 6 표준감사시간 표>

*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값이 그룹 내 중위수에 해당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을 나타냄. 실제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해당 기업의 실제 값에 근거하여 산식을 통해 산출되므로 아래의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기업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천억	707	535	725	604	676	307
2천억	852	653	891	727	821	387
5천억	1,108	863	1,188	942	1,077	533
8천억	1,277	1,003	1,386	1,083	1,248	632
1조	1,368	1,079	1,494	1,160	1,340	686
1조5천억	1,555	1,235	1,716	1,316	1,529	798
2조	1,706	1,362	1,896	1,443	1,683	889

[별표 7] 그룹 7 표준감사시간 산식

$$\begin{aligned} \text{표준감사시간} = & 3.278 \times \text{기업규모}^{0.206} \times \text{업종계수} \times 2.718^{0.282 \times \text{위험계정비중}} \\ & \times \text{손실계수} \times \text{IFRS계수} \times \text{검토계수} \times \text{연결계수} \times (1 + \text{자회사수})^{0.195} \\ & \times \text{초도감사계수} \end{aligned}$$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000	0.784	0.874	0.888	0.908	0.861

- * 손실계수 = 당기순손실인 경우 1.041, 아니면 1
- * IFRS계수 = IFRS인 경우 1.156, 아니면 1
- * 검토계수 = 반기검토 또는 분기검토를 하는 경우 1.403, 아니면 1
- * 연결계수 =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1.049, 아니면 1
- * 기업규모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말 매출액)/2 (연결 기준)
- * 위험계정비중 = 총자산대비 (매출채권+재고자산)의 비중 (연결 기준)
- * 자회사수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회사 수
- * 초도감사계수 = 초도감사이면 1.2, 아니면 1 (단, 당기감사인이 직직전 선임된 감사인이었으면 1.1)

<그룹 7 표준감사시간 표>

*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값이 그룹 내 중위수에 해당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을 나타냄. 실제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해당 기업의 실제 값에 근거하여 산식을 통해 산출되므로 아래의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기업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500억	551	432	481	489	500	474
600억	572	448	499	507	519	492
700억	590	463	515	524	535	508
800억	607	475	530	538	550	522
900억	621	487	543	551	564	535

[별표 8] 그룹 8 표준감사시간 산식

$$\begin{aligned} \text{표준감사시간} = & 7.012 \times \text{기업규모}^{0.175} \times \text{업종계수} \times 2.718^{0.190 \times \text{위험계정비중}} \\ & \times \text{손실계수} \times \text{IFRS계수} \times \text{검토계수} \times \text{연결계수} \times (1 + \text{자회사수})^{0.195} \\ & \times \text{초도감사계수} \end{aligned}$$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000	0.806	0.821	0.856	0.931	0.735

- * 손실계수 = 당기순손실인 경우 1.034, 아니면 1
- * IFRS계수 = IFRS인 경우 1.132, 아니면 1
- * 검토계수 = 반기검토 또는 분기검토를 하는 경우 1.403, 아니면 1
- * 연결계수 =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1.010, 아니면 1
- * 기업규모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말 매출액)/2 (연결 기준)
- * 위험계정비중 = 총자산대비 (매출채권+재고자산)의 비중 (연결 기준)
- * 자회사수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회사 수
- * 초도감사계수 = 초도감사이면 1.2, 아니면 1 (단, 당기감사인이 직직전 선임된 감사인이었으면 1.1)

<그룹 8 표준감사시간 표>

*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값이 그룹 내 중위수에 해당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을 나타냄. 실제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해당 기업의 실제 값에 근거하여 산식을 통해 산출되므로 아래의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기업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00억	415	334	340	355	386	305
200억	469	378	385	401	436	345
300억	504	406	413	431	469	370
400억	530	427	435	453	493	389

[별표 9] 그룹 9 표준감사시간 산식

$$\begin{aligned} \text{표준감사시간} = & 1.464 \times 10^1 \times \text{기업규모}^{0.142} \times \text{업종계수} \times 2.718^{0.136 \times \text{위험계정비중}} \\ & \times \text{손실계수} \times \text{IFRS계수} \times \text{검토계수} \times \text{연결계수} \times (1 + \text{자회사수})^{0.195} \\ & \times \text{초도감사계수} \end{aligned}$$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000	0.806	0.820	0.734	0.946	0.701

- * 손실계수 = 당기순손실인 경우 1.102, 아니면 1
- * IFRS계수 = IFRS인 경우 1.037, 아니면 1
- * 검토계수 = 반기검토 또는 분기검토를 하는 경우 1.403, 아니면 1
- * 연결계수 =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1.188, 아니면 1
- * 기업규모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말 매출액)/2 (연결 기준)
- * 위험계정비중 = 총자산대비 (매출채권+재고자산)의 비중 (연결 기준)
- * 자회사수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회사 수
- * 초도감사계수 = 초도감사이면 1.2, 아니면 1 (단, 당기감사인이 직직전 선임된 감사인이었으면 1.1)

<그룹 9 표준감사시간 표>

*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값이 그룹 내 중위수에 해당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을 나타냄. 실제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해당 기업의 실제 값에 근거하여 산식을 통해 산출되므로 아래의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기업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
100억	393	316	322	288	372	275
200억	433	349	355	318	410	303
300억	459	370	376	337	434	321
400억	478	385	392	351	453	335

[별표 10] 그룹별 기준숙련도

그룹	회계사 구분						기준 숙련도 (가중평균)
	담당이사 (15년)		등록회계사(4년)		수습회계사		
그룹 2	가중치	1.20	가중치	1.00	가중치	0.40	0.777
	시간비중	5.7%	시간비중	55.2%	시간비중	39.1%	
		0.068		0.552		0.157	
그룹 3	가중치	1.20	가중치	1.00	가중치	0.40	0.763
	시간비중	6.0%	시간비중	52.6%	시간비중	41.5%	
		0.072		0.526		0.166	
그룹 4	가중치	1.20	가중치	1.00	가중치	0.40	0.754
	시간비중	6.4%	시간비중	50.4%	시간비중	43.1%	
		0.077		0.504		0.173	
그룹 5	가중치	1.20	가중치	1.00	가중치	0.40	0.765
	시간비중	5.2%	시간비중	53.9%	시간비중	40.9%	
		0.062		0.539		0.164	
그룹 6	가중치	1.20	가중치	1.00	가중치	0.40	0.728
	시간비중	5.6%	시간비중	47.2%	시간비중	47.2%	
		0.067		0.472		0.189	
그룹 7	가중치	1.20	가중치	1.00	가중치	0.40	0.713
	시간비중	5.6%	시간비중	44.7%	시간비중	49.7%	
		0.067		0.447		0.199	
그룹 8	가중치	1.20	가중치	1.00	가중치	0.40	0.703
	시간비중	5.8%	시간비중	42.7%	시간비중	51.5%	
		0.070		0.427		0.206	
그룹 9	가중치	1.20	가중치	1.00	가중치	0.40	0.699
	시간비중	6.0%	시간비중	41.9%	시간비중	52.2%	
		0.072		0.419		0.209	

[별표 11] 업종 분류표

표준감사시간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상 대분류
제조업	C. 제조업(10~34)
서비스업	H. 운수 및 창고업(49~52)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J. 정보통신업(58~63) L. 부동산업(6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P. 교육 서비스업(8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T.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 U. 국제 및 외국기관(99)
건설업	F. 건설업(41~42)
금융업	K. 금융 및 보험업(64~66)
도소매업	G. 도매 및 소매업(45~47)
기타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B. 광업(05~08)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